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의미





글 | 사봉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 1. 사건 설명

### 가. 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 나.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 있는 가야집단공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03. 6. 15. 03:00경 A 소유 건물의 2층 바닥에 깔린 전선 중 반 단선된 부분의 과열로 전선피복이 탄화되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인근에 있던 신청인들의 건물로 번져서 건물과 사무실 집기, 자재, 공장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신청인들은 2003. 7. 11. A를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신청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04. 8. 3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 4.

28. 법률 제607호로 제정된 것)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라. 결정 이유의 요지

(1)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실화책임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화재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할 필요가 있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많이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피해의 대상과 내용·범위,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재산정도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

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안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되,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키기가 상당하다.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 마.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

#### (1)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실화책임법과 같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법례는 실화자에게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관습이 형성된 일본 이외에는 유례가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관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화책임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내화성



주 1)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본다.

이 강한 건축양식에 따른 대형건축물의 증가, 화재의 조기진압과 예방을 위한 소방관계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실화자를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실화책임법의 필요성도 많이 약화되었다. 또한 실화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산사고,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의 범위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책임주의를 관철하거나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위험책임주의를 도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현대의 입법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실화자의 구제만을 우선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은 불의 특성과 실화자의 구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은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의 현실적인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보충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2)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단순위헌 의견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수의견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이와 같이 실화책임법이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실화책임법의 외관을 형식적으로 존속시키고 입법부의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과 달리 단순위헌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 2. 해설<sup>1)</sup>

### 가. 실화책임법의 특성

# SPECIAL THEME · 01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정지 판결 및 대응방안

주 2) 현재 1998. 5. 28. 96헌가4 등, 판례집 10-1, 533-534: 이 사건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주 3)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불법행위법의 기능은, ①피해자에 대한 보상, ②법익침해행위의 억제 또는 예방, ③위법행위자의 처벌, ④피해자의 만족, ⑤사회질서의 회복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고,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떤 기능이 강조되어 왔는가는 시대, 장소 또는 불법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들 다섯 가지 기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민법주해 (XVIII), 채권(1), 김성태 집필부분, 29-30쪽 참조].



### (1) ‘과실책임주의’의 예외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차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파생된 과실책임의 원칙을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sup>2)</sup> 그런데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일반불법행위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라는 특성을 가진다.

### (2)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주의와의 비교

(가) 과실책임주의는 역사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인책임주의 내지 결과책임주의’를 극복하고, 17세기의 자연법 사상과 교회법의 영향 및 19세기의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경제활동 내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상황 및 경제정책적 동기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이 담당하는 기능은 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주장되고

주 4) 민법주해(XVIII, 채권(11), 김성태 집필부분, 31쪽 참조

주 5) 무과실책임의 이론적 근거로는 위험책임설, 보상책임설, 원인책임설, 구체적 공평설 등이 있으나, 그 중 통설적 견해인 위험책임설에 따르면, 위험한 시설이나 위험한 활동의 운영은 그 자체 내에 완전지배 불가능한 손해발생의 추상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자는 처음부터 그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사회생활상 필요불가결한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에 수반되는 추상적인 위험을 '허용된 위험'으로 허용하는 대신, 이러한 시설이나 활동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보다는 위험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손해조정이 된다고 한다[민법주해(XVIII, 채권(11), 서광민 집필부분, 138-146쪽 참조]

주 6)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원리를 도입한 법률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외에 광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산업법,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이 있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무과실책임은 아니지만 위험책임의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있고<sup>3)</sup>, 법경제학이나 비판법학의 입장에서 기존의 불법행위법이 적정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기능이 '보상과 예방', 그 중에서도 '발생한 손해를 가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 내지 전보하는 역할이 불법행위법의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는 이 보상 기능이 바로 정의(正義)의 요청에 부합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sup>4)</sup>.

(나) 이와 같이 당시의 시대상황과 경제정책적 동기를 배경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내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책성의 근거로 출발한 '과실책임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도시화 등 새로운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배분'이라는 새로운 요청 앞에 서게 된다.

과실책임주의의 수정원리인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원칙은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귀속되는 것을 인정하는 책임원칙으로서, 이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고속교통수단, 광업 및 원자력 산업 등의 위험원(危險源)이 발달하고, 또 누구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위험원으로부터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되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배분이라는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존해서는 그 공평타당한 조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반성과 비판을 통하여 인정된 것이다<sup>5)</sup>.

(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과 같이 일반불법행위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으면서도,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한 법률<sup>6)</sup>처럼 위험한 시설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손해를 가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위험을 지배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피해자 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특색이 있다.

#### 나. 실화책임법의 재산권 침해 여부

##### (1) 중전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실화책임법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실화책임법으로 인한 실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의 제한이 법익의 균형성,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어 그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 SPECIAL THEME · 01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정지 판결 및 대응방안

주 7)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법률에 의한다.

주 8) 1899. 3. 8. 법률 제40호

주 9) 이 사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조선민사령 제1조 제4호는 이를 삭제한다. 본 법 시행당시의 타법령에서 실화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본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대국회 제38회 제24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61. 4. 22자) 3-4쪽에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 20. 민의원을 통과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올시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이것이 문명국가라고 할까 세계 어느 국가든지 대개 공통적인 그런 이론에 의한 법안인데, 이것은 전에 일본이 일제 때에 있어서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뒤 해방 후에도 그 법령을 그대로 적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구법령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먼저 일제 때 법안을 폐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률로 이것을 대체한다고 그렇까 다시 이것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내용이러든지 이론은 똑같은 법안이올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995. 3. 23. 92헌가4 등, 판례집 7-1, 289-306, 이하 '중전 선례'라 한다).

#### (2) 실화책임법의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의 정당성

##### (가) 실화책임법의 입법연혁

실화책임법은 일제 강점 후 1912. 3. 18. 공포된 조선민사령(제령 제7호) 제7호 제1조<sup>7)</sup> 제4호에 의하여 적용되었던 일본의 '失火ノ責任ニ關スル法律<sup>8)</sup>(이하 '일본실화법'이라 한다)'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서<sup>9)</sup>, 다른 나라에서도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범위를 다소 제한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이외에는 이와 같이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원칙으로 '중과실책임주의'를 정한 법률은 없다.

##### (나) 실화책임법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인접건물들의 구조, 화재 당시의 기상 상태, 소방관서의 진화속도 등 실화자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장래의 우연적인 사정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실화자에게 모두 책임지우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화자 자신도 그 화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한한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실화책임법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의 합리성 등

①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방법과 정도 등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②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화자의 배상 책임을 전부 부정하고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단의 선택은, 화재가 기본적으로 실화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실화피해자로서는 실화 및 연소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



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실화책임법은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실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를 가혹한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제765조<sup>10)</sup>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화자의 책임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방법이나 실화피해자를 공적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 ③ 소결

따라서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의외의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37조 제2항(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주 10)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주 11) 헌재 1989. 9. 8. 88헌가6, 판례집 1, 199, 261

주 12) '헌법재판실무제요(제개정판)', 2003, 132쪽

주 13) 김현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론과 실제', 헌법논총 14집, 211-212쪽

주 14) 원래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용 중지가 원칙이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주문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 중지

(1) 일반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sup>11)</sup>,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결정의 주문형식<sup>12)</sup>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규범이 위헌일 경우에는 위헌결정을 통하여 무효선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헌적 법률을 존속시킬 때보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적 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나, 입법자에게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위헌결정으로 새로운 법적 상태를 만듦으로써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문제가 있는 법규범이 예컨대 경제관계의 변화와 같은 실제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위헌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게 된다.<sup>13)</sup>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의 선택은 입법정책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또한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은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





라기보다는 그 후의 건축양식의 변화와 소방행정의 발달 및 관계법령의 정비 등 현실적인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고, 다만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므로,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 중지를 명하게 된 것이다.<sup>14)</sup>

### 3. 맺음말

이 사건 결정은 실화자를 화재로 인한 지나친 손해배상의 부담 등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실화책임법의 필요성이 현제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화책임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종전 선례를 변경하여 실화피

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실화자와 실화피해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개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일부 언론매체는 실화책임법이 목조건물이 많은 데다 화재보험 등 별다른 피해예방 조치가 없었던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이웃집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웃집 주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 결정으로 화재 규모나 원인, 실화자의 배상능력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경향신문 2007. 8. 31.자).<sup>15)</sup>